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넘어 서로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 031-697-7700
W. www.socialenterprise.or.kr
(사)신나는조합
(서울지역 통합지원기관)
T. 070-7600-0507
W. www.joyfulunion.or.kr

협동조합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T. 1544-5077
W. www.seoulcoop.net
(사)신나는조합
(서울지역 통합지원기관)
T. 070-7600-0507
W. www.joyfulunion.or.kr

마을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353-3553
W. www.sehub.net

자활기업

서울광역자활센터
T. 02-318-4140
W. www.sjahwal.or.kr
강남지역자활센터
T. 02-455-1801
W. www.gangna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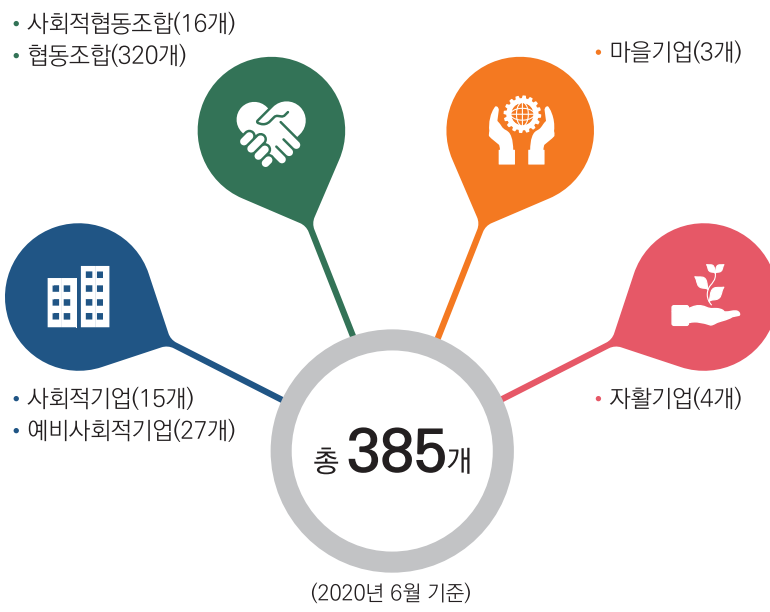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국민연금 강남사옥 3층)
전화 02-6956-2021 | 팩스 02-6003-0016
메일 gnsec@gnsec.or.kr | 홈페이지 www.gnsec.or.kr



강남구 사회적경제

강남구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구분	주요사업
네트워크 운영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
교육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교육, 예비창업자 아카데미 (대상: 강남구민)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판로교육 (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	• 창업공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상담
판로지원	• 강남사회적경제 마켓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홍보지원	• 강남구민,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소통 및 인식 제고 (소셜미디어 및 홍보관 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

인증(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서울시 / 관련부처
인증/ 지정요건	1. 조직형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좌동
	2.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3개월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	좌동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좌동
	7.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등)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신청	연중접수(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지원 내용

구분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금융 지원 (모태펀드/ 정책자금)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기타 경영지원*
사회적 기업	○	○	○	○	○	○
예비사회적 기업	○	○	-	-	-	△

※ 일부지원의 경우 연도별 차등 지원(인건비 등)

* 경영컨설팅 지원, 부지/시설비 지원(예비사회적기업은 미소금융만 지원), 모태펀드

상담 및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신나는조합



협동조합이란?

-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정의)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구분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손실금 보전 및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에 대한 배당 가능 (이용배당_전체배당액의 50% 이상 / 출자배당_총 출자금의 10% 미만)	배당 불가
청산	채무를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부채 및 출자금을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

유형 및 종류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가 주인이 되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영위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동물병원, 사회서비스, 언론 등)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외식업, IT개발자, 운송업 등)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공동육아, 주택, 와인구매 등)

지원 내용

- 설립지원 :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설립신고·인가업무 처리 지원, 업무지침 마련 지원 등
- 운영지원 : 설립 및 경영 상담, 협동조합 맞춤형 매뉴얼 보급
- 기타지원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코칭 연계, 협동조합 교육 지원, 오픈프라이인 홍보 지원

상담 및 문의처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 (사)신나는조합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유형 및 종류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신유형** 마을기업 |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형 등 신유형 마을기업
- **유통형**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판로확보(광역 1개소)
-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심사 및 지정

지정 요건

01 조직형태	02 공동체성	03 기업성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	• 모든 회원의 법인 출자 원칙 준수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마을 기업의 출자자로 참여 * 10인 이상 출자 권장, 6인 이상의 경우, 지역주민 비율은 70% 이상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추구, 시장경쟁력 확보 • 손실금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기준 충족
04 공공성	05 지역성	06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교육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 30% 미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 50% 미만	• 지역기반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 지역주민의 사업 주도성 - 보조금 20%이상 자부담 출자, 지역주민 고용	• 설립 전 교육 : 5인 이상, 24시간 교육 이수 • 2차년도 대상 : 5인 이상 4시간 전문과정 이수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한도 최소 2회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단,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직원에게 대해 보조금의 20% 이내
- 자립 및 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교육,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

상담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의 종류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 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자활기업 근로일수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 내용

직접지원	간접지원
• 창업자금 지원 •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및 우수 자활기업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연계)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물 우선구매 • 사업자금 융자 • 전세점포 임대지원

상담 및 문의처

서울광역자활센터 / 강남지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이윤을 넘어 서로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극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T. 031-697-7700
W. www.socialenterprise.or.kr
(사)신나는조합
(서울지역 통합지원기관)
T. 070-7600-0507
W. www.joyfulunion.or.kr

협동조합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T. 1544-5077
W. www.seoulcoop.net
(사)신나는조합
(서울지역 통합지원기관)
T. 070-7600-0507
W. www.joyfulunion.or.kr

마을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2-353-3553
W. www.sehub.net

자활기업

서울광역자활센터
T. 02-318-4140
W. www.sjahwal.or.kr
강남지역자활센터
T. 02-455-1801
W. www.gangna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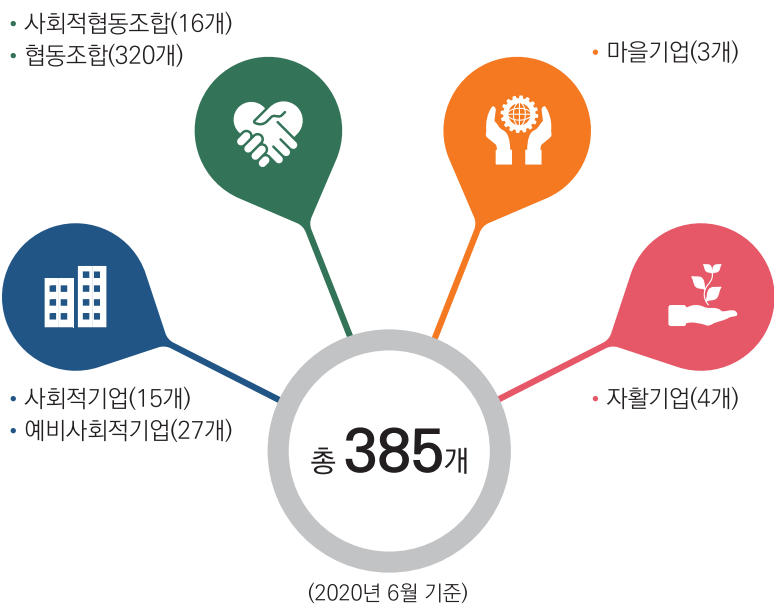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국민연금 강남사옥 3층)
전화 02-6956-2021 | 팩스 02-6003-0016
메일 gnsec@gnsec.or.kr | 홈페이지 www.gnsec.or.kr



강남구 사회적경제

강남구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지원사업

구분	주요사업
네트워크 운영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
교육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교육, 예비창업자 아카데미 (대상: 강남구민)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판로교육 (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	• 창업공간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상담
판로지원	• 강남사회적경제 마켓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
홍보지원	• 강남구민,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소통 및 인식 제고 (소셜미디어 및 홍보관 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

인증(지정)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서울시 / 관련부처
인증/ 지정요건	1. 조직형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좌동
	2.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6개월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3개월 이상)
	3. 사회적 목적 실현	좌동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좌동
	7.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등)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신청	연중접수(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지원 내용

구분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 원	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금융 지원 (모태펀드/ 정책자금)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기타 경영지원*
사회적 기업	○	○	○	○	○	○
예비사회적 기업	○	○	-	-	-	△

※ 일부지원의 경우 연도별 차등 지원(인건비 등)

* 경영컨설팅 지원, 부지/시설비 지원(예비사회적기업은 미소금융만 지원), 모태펀드

상담 및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신나는조합



협동조합이란?

-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정의)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구분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손실금 보전 및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에 대한 배당 가능 (이용배당_전체배당액의 50% 이상 / 출자배당_총 출자금의 10% 미만)	배당 불가
청산	채무를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부채 및 출자금을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

유형 및 종류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사업자가 주인이 되어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영위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및 마케팅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동물병원, 사회서비스, 언론 등)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외식업, IT개발자, 운송업 등)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공동육아, 주택, 와인구매 등)

지원 내용

- 설립지원 :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설립신고·인가업무 처리 지원, 업무지침 마련 지원 등
- 운영지원 : 설립 및 경영 상담, 협동조합 맞춤형 매뉴얼 보급
- 기타지원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코칭 연계, 협동조합 교육 지원, 오픈프라이인 홍보 지원

상담 및 문의처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 (사)신나는조합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유형 및 종류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신규형 마을기업 |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도시형 등 신규형 마을기업
- 유통형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판로확보(광역 1개소)
-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심사 및 지정

지정 요건

01 조직형태	02 공동체성	03 기업성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	• 모든 회원의 법인 출자 원칙 준수 •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마을 기업의 출자자로 참여 * 10인 이상 출자 권장, 6인 이상의 경우, 지역주민 비율은 70% 이상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추구, 시장경쟁력 확보 • 손실금 충당 및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기준 충족
04 공공성	05 지역성	06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교육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 30% 미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 50% 미만	• 지역기반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 지역주민의 사업 주도성 - 보조금 20%이상 자부담 출자, 지역주민 고용	• 설립 전 교육 : 5인 이상, 24시간 교육 이수 • 2차년도 대상 : 5인 이상 4시간 전문과정 이수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한도 최소 2회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단,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직원에게 대해 보조금의 20% 이내
- 자립 및 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교육, 박람회 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홍보·마케팅 등

상담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자활기업의 종류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 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참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자활기업 근로일수의 조건이행 기준 충족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지원 내용

직접지원	간접지원
• 창업자금 지원 •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 (인정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및 우수 자활기업 지원 • 한시적 인건비 지원(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연계)	• 국공유지 우선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물 우선구매 • 사업자금 융자 • 전세점포 임대지원

상담 및 문의처

서울광역자활센터 / 강남지역자활센터